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. 7. 13 선고 2021가단278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2. 5. 20 선고 2021나60660 판결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. 7. 13 선고 2021가단278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

담당변호사 최학세

변 론 종 결 2021. 6. 1.

판 결 선 고 2021. 7. 13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85,3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값는 날까지 연

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의 부 망 C은 망 D과 슬하에 원고, E, F, G을 두었고, 망 H과 슬하에 I, J, K, L를 두었으나 호적상으로는 이들 또한 망 D을 모로 하여 출생신고가 되었다. 망 H은 망 D 사망 후 망 C의 배우자로 호적에 등재되었는데, 망 C이 사망하자 원고를 비롯한 위 8명 자녀들의 동의하에 망 H이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. 이후 망 H이 사망하였는데, 위 8명 자녀들은 호적상 망 C과 망 D의 자녀들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. 이에 원고를 비롯한 위 8명 자녀들은 망 H이 전남편과의 슬하에 둔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재산을 상속받아 이를 분배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44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. 그런데 업무처리를 담당한 J이 피고에게 70,000,000원을 지급하여 26,000,000원이 초과지급 되었다. 또한 피고는 상속재산 중 경남 함안군 M 부동산, N 부동산을 합계 59,300,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한 85,300,000원(=26,000,000원 + 59,300,000원)을 반환하여야 한다.

2. 판단

가. 26,000,000원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 분배과정에서 70,000,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.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위 8명 자녀들과 피고가 상속재산 분배에 관하여 합의한 2014. 5. 2.자 합의서 사본(갑 제2호증)에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피고에게 44,000,000원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,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을 제1호증에 의하면,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피고를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창원지방법검찰청 마산지청은 2020. 9. 22.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. 더군다나 원고

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, 원고에게 다른 형제들 몫의 부당이득까지 구할 권한도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59,300,000원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

갑 제3,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위 M 부동산은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. 7. 27. 매매(토지와 건물 거래가액 합계 24,500,000원)를 원인으로 F, L에게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, 위 N 부동산은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. 1. 6. 매매(거래가액 34,800,000원)를 원인으로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전항에서 본 위 합의서 사본에 의하면, 위 M 부동산(가옥 및 토지)은 F, K, L 3인에게 명의이전하고(제4항), 위 N 부동산은 F에게 이전 양도하기로(제2항)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이전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 매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. 검찰의 위 불기소처분에서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다. 더군다나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, 원고에게 다른 형제들 몫의 부당이득까지 구할 권한도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황인성